

#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65
----------	------

2018. 2. 27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# 1. 제안경위

- 2018. 2. 8. 우창윤 의원 발의(2018. 2. 12 회부)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,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하고, 제척,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-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3항제4호)
-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하고, 제척,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(안 제17조)

## 4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8일 우창윤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,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(안 제9조의2)하고,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장애인을 포함토록(안 제14조제3항제4호) 하며,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사항을 명확히 규정(안 제17조)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### □ 안 제9조의2(시범사업 시행) 신설 관련

- 안 제9조의2는 '16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, 시범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.
- 다만, 문화본부 산하 디자인정책과가 시행중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 사업<sup>1)</sup>과 시범

---

1) 2018년도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사업예산 중 “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” 사업비로 7억 6,8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
사업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, 시범사업을 위 사업과 차별화하여 운영할 경우 시범사업의 내용과 방법, 지원대상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## □ 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관련

-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붙임 1 참고)을 포함시킴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현행 조례는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’를 둘 수 있는데,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(붙임 2 참고).
-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“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”에 장애인위원이 포함되도록 담보할 수 없어 조례개정의 실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,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위원의 위촉요건을 ‘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’로 수정하여 개정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.

---

(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·운영,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,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, 창의 교육 등 사업으로 구성)

## □ 안 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관련

-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, 제척,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으로,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종합하면, 이 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확보하고,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의 참여확대를 도모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 【붙임 1】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(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1)

### 1. 지체장애인(肢體障礙人)

- 가. 한 팔,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
- 나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(指骨 : 손가락 뼈)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다. 한 다리를 리스프랑(Lisfranc :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)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라.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- 마.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
- 바.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
- 사. 지체(肢體)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### 2. 뇌병변장애인(腦病變障礙人)

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(腦卒中)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# 3. 시각장애인(視覺障礙人)

- 가. 나쁜 눈의 시력(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0.02 이하인 사람
- 나.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- 다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- 라.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

### 4. 청각장애인(聽覺障礙人)

- 가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- 나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
- 다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- 라.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
## 5. 언어장애인(言語障礙人)

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
## 6. 지적장애인(知的障礙人)

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## 7. 자폐성장애인(自閉性障礙人)

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## 8. 정신장애인(精神障礙人)

지속적인 정신분열병, 분열형 정동장애(情動障礙 :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),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·행동·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## 9. 신장장애인(腎臟障礙人)

신장의 기능부전(機能不全)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 10. 심장장애인(心臟障礙人)

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 11. 호흡기장애인(呼吸器障礙人)

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 12. 간장애인(肝障礙人)

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 13. 안면장애인(顔面障礙人)

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 14. 장루·요루장애인(腸瘻·尿瘻障礙人)

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(腸瘻) 또는 요루(尿瘻)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#### 15. 뇌전증장애인(腦電症障礙人)

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## 【붙임 2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

제1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도시디자인위원회 :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 제1호 및 제3호
2. 건축위원회 :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, 제5호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.

1.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
5.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
6.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7.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
8.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
9.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
10.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